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이 만 재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일 자	질의	2012년 11월 27일
			답변	2012년 11월 28일
회 의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답변내용

-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예산액

(단위:백만원)

합계	운영비				난방비				비고
	소계	분권	도비	군비	소계	국비	도비	군비	
690	446	200	87	159	244	61	85	98	

※ 국비보조에 따른 내시자료이며, 경로당에 지급은 『2012년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계획(2011.11.03)』 강원도 지침에 따라 통합하여 지원함

2. 지원기준 : 【연지급액 = 2,510천원 + 37천원×회원수】

- 회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최소 3,250천원 ~ 최대 6,210천원)

※ 회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면적이나 기후 차이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3. (예) 회원 수 100명일 경우 분기별 지급내역

(단위:천원)

회원수	연지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0	6,210	2,435	925	925	1,925
산출식	$(37 \times 100) + 2,510$	$(37 \times 100 \times 1/4) + 1,510$	$37 \times 100 \times 1/4$	$37 \times 100 \times 1/4$	$(37 \times 100 \times 1/4) + 1,000$

※ 난방비는 계절을 감안 경로당별 기본금액(2,510천원)을 동절기(1~3월, 10~12월)에 지급

※ 분회경로당 지원 : 월 100천원 (읍면 구심점 역할에 따른 경비소요를 감안 추가지원)

※ 동절기 미등록 경로당 2개소 난방비 50% 지원(중2리, 천변리)

※ 4/4분기 신규등록 3개소 추가지원

붙임 1. 2012년 경로당 지원기준 변경 계획 1부.

2. 2012년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계획 통보 1부. 끝.

등록번호	주민생활지원실-44367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

주무관	노인복지담당	주민생활지원 실장	부군수	군수
송민정	이 용주	김동철	김종환	이석래
협조자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박태영 전 장 호	

2012년 경로당 지원기준 변경 계획

-결 재 요약-

- 검토배경 : 강원도의 지원기준 변경(정액 ⇒ 회원수 비례 차등)
- 지원기준 : $37,000\text{원} \times \text{회원수} + 2,510,000\text{원}$
(연간 3,250천원 ~ 6,210천원)
- 변경효과 : (2011년) 481백만원 → (2012년) 652백만원
 - 마을경로당 250천원 ~ 3,210천원 증가
 - 분회경로당 390천원 ~ 2,869천원 감소
- 보완대책 : 분회경로당 분회장활동비 월100천원 별도지원
(연간 9,600천원 소요)

2012년 경로당 지원기준 변경 계획

- 『'12년 강원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지침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하여 차등지급 하도록 함 (군 전체 171백만원 증가)
- 강원도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분회경로당 지원액 감소에 따라 분회장 활동비 월 100천원 별도 지급

□ 2011년 우리군 지원기준

(단위:천원)

구분	경로당 수	연 지급액			월 지급액		비고
		합계	운영비	난방비	운영비	난방비	
마을경로당	155	3,000	1,800	1,200	동절기200 하절기100	200	
분회경로당	8	6,600	4,200	2,400	동절기400 하절기300	400	

※ 분회 경로당 운영비 중 100천원은 분회장 활동비, 동절기 주부식비 100천원 지급

□ 2012년 강원도 지원기준(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조례 제5조)

(단위:천원)

기준인원	연 지급액	산출기초	월 지급액	비고
100명	6,210	37 × 100명 + 2,510	518	
80명	5,470	37 × 80명 + 2,510	456	
50명	4,360	37 × 50명 + 2,510	364	
20명	3,250	37 × 20명 + 2,510	271	

○ 지원기준 : 37,000원×회원수 + 2,510,000원

- 기준인원 : 20인부터 100인까지 1인 단위로 지원단위 세분화
- 지원방식 : 운영비(1일 1식 포함), 난방비(동절기) 통합 일괄지원

□ 기준변경 효과

- 마을경로당의 경우 최하등급(E등급) 연 3,250천원은 2011년 연 3,000천원 대비 8.3% 증가
- 분회경로당 회원수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2011년 지원수준보다 적어지고, 기존 지급되던 분회장 활동비가 제외되어 별도지원 필요

[분회경로당 지원금 변경]

(단위:천원, m²)

경로당	회원수	2011년지원금	2012년지원금	차액	면적	난방형태	비고
평창읍분회	97	4,200*	6,099	+1,899	178,17	기름	
미탄면분회	53	6,600	4,471	-2,129	210.42	심야전기	
방림면분회	33	6,600	3,731	-2,869	256,02	심야전기	
대화면분회	37	6,600	3,879	-2,721	344,79	심야전기	
봉평면분회	70	6,600	5,100	-1,500	359,57	심야전기	
용평면분회	68	6,600	5,026	-1,574	263,21	심야전기	
진부면분회	132	6,600	6,210	-390	477,91	심야전기	
대관령면분회	98	6,600	6,136	-464	322,04	심야전기	
합계	588	50,400	40,652	-9,748			

* '11년 문화복지센터 내 위치 난방비 미지급

- 월100천원 분회장 활동비 9,600천원과 감소된 9,748천원 규모가 비슷함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분회경로당 면적이 크에 따라 연료비 과다 소요
⇒ 강원도 공통기준 및 활용인원에 비해 대규모 신축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비 별도지원은 어려움
- 읍면 구심점 역할에 따른 경비소요 ⇒ 분회장 활동비 존치

□ **2012년 지원계획**

- 경로당 통합운영비 : 652,923천원
 - 도비 20%, 군비 80%
 - 산출근거

(단위:천원)

등급	회원수	경로당수	지원금액	산출식	비고
A	100명 이상	2	12,420	(37천원×100+251만원)*2개소	
B	80~99명	4	23,508	142개소 경로당 운영비 (37천원×회원수+251만원)의 합	
C	50~79명	36	169,355		
D	20~49명	102	385,890		
E	20명 미만	19	61,750	(37천원×20+251만원)*19개소	
합계	6,552명	163	652,923		

- 분회경로당 활동비 : 9,600천원
 - 군비 100% 별도 편성
 - 산출근거 : 월100천원×12월×8개소

(2011년까지 지급하였으며, 기준변경으로 감소한 금액)

□ **행정사항**

- 경로당 회원 전수 조사 : '11. 11월말까지

-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 경로당 회원명부 정리
(신규자, 사망자, 전출입자)

-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 : 주민등록상 노인인구 확인

=> 주민등록상 노인인구와 실질적인 경로당 이용인원을 비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수 허위보고 방지

-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 강원도 통합기준 반영

- 국비 추가 지원 시 도비 및 군비 감액조정 반영(추경)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12년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계획 통보

2012년 경로당 통합운영비 세부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자체 집행 계획을 수립하시고, '12년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시·군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2년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계획 1부. 끝.

강원도지사

수신자 춘천시장(복지2과장), 원주시장(사회복지과장), 강릉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동해시장(복지여성과장), 태백시장(사회복지과장), 속초시장(여성가족과장), 삼척시장(사회복지과장), 홍천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횡성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월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전결 11/02

주무관 김희진 경로복지담당 정일섭 사회복지과장 이석남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29591 (2011. 11. 03.) 접수 주민생활지원실-43198 (2011. 11. 03.)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별관 2층 사회복지과 / <http://www.provin.gangwon.kr>
전화 033-249-2677 전송 033-249-4037 / freedom91@korea.kr / 공개

2012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계획

-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들의 여가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통합·확대지원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명 : 강원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 47조,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제5조
- 사업대상 : 2,875개 경로당('11. 8월말 기준)
- 소요예산 : 11,203백만원(도비 2,241, 시군비 8,962)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비(1일 1식포함) 및 난방비 통합·확대 지원

2. 추진방향

- 경로당 지원기준의 통합적용을 통한 경로당별 균형있는 지원체계 구축
- 실질적 수혜자인 노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방안 마련
- 한시적 난방비 지원사업비(국비)를 지방비로 편성, 안정적 재원 확보
※ 국비 지원은 지속 건의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추진주체	역 할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운영지침 수립 및 사업 총괄 • 경로당 예산 지원 • 경로당 운영 및 예산 집행실적 관리 등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운영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 •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운영 지도·감독 • 경로당별 예산지원 및 결산 등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경로당 운영예산 집행 및 결산 등

○ 지원기준 : 회원수

- 기준인원 : 20인부터 100인까지 1인 단위로 지원단위 세분화
- 산출식 : $37,000X + 2,510,000(X=1인)$ ※ 매년 물가 상승률 별도 반영
- ※ 단, 20인 미만시 20인으로, 100인 초과시 100인으로 산출

[경로당 유형별 월별 지원규모 비교]

기준인원	2011년(월평균)	2012년(월평균)	비고
99명	392천원(250+142)	514천원	122천원 증
80명	392천원(250+142)	456천원	64천원 증
79명	342천원(200+142)	453천원	111천원 증
50명	342천원(200+142)	363천원	21천원 증

- ※ 2011년 20인 편차 미고려, 2012년 1인 단위로 세분화하여 편차 해소
- 지원방식 : 운영비(1일 1식 포함), 난방비(동절기) 통합 일괄지원
- ※ 단, 동절기(1~3, 11~12), 비동절기(4~10) 구분 지원

[월별 지원액 예시- 50인 경로당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운영 경비	운영비	222	222	222	221	221	222	222	222	221	221	222	222	2,660
	난방비	340	340	340								340	340	1,700
	합계	562	562	562	221	221	222	222	222	221	221	562	562	4,360

- ※ 2011년 대비 연간 260천원 증가, 월별 21천원 증가

○ 기대효과

- 운영비 및 난방비 통합 지원을 통한 단일 지원체계 확립으로 불필요한 행정수요 감소
- 실질적인 지원규모 증가로 인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한시적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난방비를 운영비에 포함 지속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난방비 확보효과 도모

《참 고》

[주요 달라진 점]

구 분	2011년 기준	2012년 기준	비 고																		
지원기준	○ 5개 유형으로 구분, 일괄지원	○ 20~100명을 기준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 - 산출식 : $37,000X + 2,510,000(X=1인)$ ※ 경로당 1개소당 2,510천원의 기본 경비에 회원수 1인당 연간 37,0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을 5등급에서 등록 회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 균형있는 배분 추진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 유형</th> <th>등급기준</th> <th>금액(월)</th> </tr> </thead> <tbody> <tr> <td>A</td> <td>등록인원 100명이상</td> <td>300천원</td> </tr> <tr> <td>B</td> <td>등록인원 80~99명</td> <td>250천원</td> </tr> <tr> <td>C</td> <td>등록인원 50~79명</td> <td>200천원</td> </tr> <tr> <td>D</td> <td>등록인원 20~49명</td> <td>150천원</td> </tr> <tr> <td>E</td> <td>등록인원 20명 미만</td> <td>100천원</td> </tr> </tbody> </table>			지원 유형	등급기준	금액(월)	A	등록인원 100명이상	300천원	B	등록인원 80~99명	250천원	C	등록인원 50~79명	200천원	D	등록인원 20~49명	150천원	E	등록인원 20명 미만	100천원
	지원 유형			등급기준	금액(월)																
	A			등록인원 100명이상	300천원																
	B			등록인원 80~99명	250천원																
	C			등록인원 50~79명	200천원																
D	등록인원 20~49명	150천원																			
E	등록인원 20명 미만	100천원																			
지원방식 및 예산액	○ 운영비, 난방비 구분 지원 - 운영비 : 5,485백만원(도 1,097, 시군 4,388) - 난방비 : 4,761백만원(국 2,098, 도 533, 시군 2,130)	○ 운영비, 난방비 통합 지원 - 11,203백만원(도 2,241, 시군 8,962)	- 전체예산 9.3% 증가,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난방비 확보																		

4. 향후 조치사항

- 2012년 당초예산 편성시 통합기준 반영(도, 시·군)
 - 전 시·군 적용을 통한 통합기준 운영효과 극대화 협조
 - 2012년 국비 추가 지원시 도비 및 시군비 감액 조정 반영(추경)
- 난방비 국비 지속지원 건의
 - 전국 부시장·부지사회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적극 활용
- 시·군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경로당 운영비 집행실적 매분기 결산 실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 제출 추진
- 경로당별 회원 전수조사 실시 : '11. 11월말까지
 - 사망자, 전출입자 관리 등 확인 철저
 - 회원 불성실 등록 및 운영 경로당 운영비 삭감 등 조치 확행

[참고] 회원수별 경로당 현황

시군	회원수별 경로당 개소수										
	계	20이하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0초과
계	2,875	226	697	631	510	322	209	107	49	41	83
춘천시	326	21	103	76	54	19	28	8	4	1	12
원주시	382	20	118	96	58	43	23	9	5	2	8
강릉시	293	12	66	61	56	28	26	23	7	3	11
동해시	94	0	15	27	12	19	9	1	5	1	5
태백시	81	6	35	21	12	6	1	0	0	0	0
속초시	70	4	19	14	10	5	5	2	2	3	6
삼척시	217	40	61	39	34	16	15	5	0	4	3
홍천군	183	10	21	32	42	36	14	13	7	5	3
횡성군	177	8	34	44	45	22	15	4	3	2	0
영월군	163	18	43	40	31	23	4	4	0	0	0
평창군	163	19	38	36	32	19	9	4	2	2	2
정선군	140	22	17	36	29	20	8	6	1	0	1
철원군	118	6	14	12	12	14	14	11	5	10	20
화천군	70	2	6	15	14	14	11	3	1	2	2
양구군	85	13	30	17	13	6	4	2	0	0	0
인제군	79	3	11	17	20	9	12	3	3	1	0
고성군	110	11	29	22	21	8	4	5	1	1	8
양양군	124	11	37	26	15	15	7	4	3	4	2